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 시 비출자 공동사업 영위 시 ⦁출자금액 비율로 분담 ⦁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：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⦁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：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 연도의 매출액 비율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(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 보유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)(법인이 선택 가능하며 선택시 5년 의무 적용) ☞ 미선택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임 - 참석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공동행사비：참석인원비율 -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공동구매비：구매금액비율 - 국내광고는 국내매출 기준 - 국외광고는 수출금액(대행수출금액 제외) -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: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